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7.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호)
- 나. 회부일자: 2022. 8.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8. 2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1인가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8조)
- 1인가구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기간 : 2022. 7. 7. ~ 2022. 7. 27. (20일간)

- 의견 : 의견 없음

○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및 미반영사유
인권 영향 평가	제4조제3항 “지원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타 구처럼 (예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실태조사를 따로 구체적으로 명기 바람.	반영	제4조제3항 삭제, 제5조(실태조사) 신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패 영향 평가	제6조제5항 지원대상 ‘공유주택’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지원대상 불분명	반영	제2조(용어 정의)제5항 ‘공유주택’ 용어의 정의 추가 “공유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절차, 관리·감독, 위법행위 시 제재 규정 없음	반영	위탁의 개념 정의 및 절차, 관리·감독, 수탁기관 위법행위 제재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 또는 관련 조례 준용 명시로 아래사항 추가 → 위탁의 절차,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3항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탁 사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탁기관의 무분별한 사무위탁 가능	미반영	제8조에 “위탁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기재(추가)되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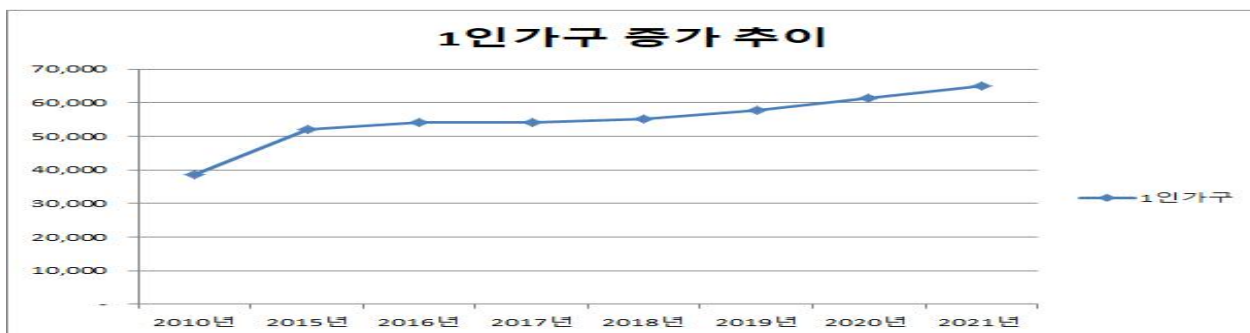
가. 제정안 개요

- 본 제정안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가족분화로 인해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34.9%, 성북구는 전체 가구 수의 3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성북구의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비교 1인가구 수 현황 >

구분	전국	서울	성북구	비고
전체가구 수	2,092만가구	398만가구	18만가구	
1인가구 수	664만가구	139만가구	61천가구	
1인가구 비율	31.7%	34.9%	34.2%	

< 최근 성북구 1인가구 변동 추이 >



< 출처: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1인가구 비율 통계자료 참조 >

- 1인가구의 증가는 주거, 문화,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본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1인가구', '1인가구 정책'과 '사회적 가족도시'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4조~제5조)

- 안 제4조는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뿐만 아니라 분야별 추진 과제, 추진방법 및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효과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관계 형성, 돌봄지원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와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사무위탁 근거 마련 (안 제8조)

- 안 제8조는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저출산, 고령화, 비혼 등 다양한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은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하다 사료됨.
-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제정일자
1	금 천 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17.05.15.
2	은 평 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18.11.01.
3	서 초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18.12.13.
4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4.02.
5	광 진 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5.19.
6	마 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9.24.
7	성 동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09.16.
8	중 랑 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09.29.
9	강 동 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09.29.
10	관 악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11.11.
11	동 작 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12.09.
12	용 산 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1.12.31.
13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05.04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7.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호)
- 나. 회부일자: 2022. 8.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8. 2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심각한 저출산 현상 등 변화된 환경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성복지시설 명칭 변경 및 성북 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 신설로 인한 시설 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만 18세 이하의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혜택 신설 (안 제6조 제4항)
- 여성복지시설 명칭 변경 및 신규시설 추가(안 별표 1)
- 여성복지시설 프로그램 교육내용 수정 및 수강료 상한선 현실화 (안 별표 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 권고 용어 수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기간 : 2022. 7. 7. ~ 2022. 7. 27. (20일간)

- 의견 : 의견 없음.

○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구분	권고안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개선안 포함)
인권 영향 평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기존안)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 ‘(권고안)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로 바꾸기 바람	미반영	권고안이 반영될 경우 여성회관 (개정 후 성북여성문화센터)의 추정세입이 년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u>수강료 인상이 불가피</u> 하게 됨에 따라 기존안을 유지하되, 권고안을 존중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장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성북 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따른 이용 규정 마련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은 조문 중 “생활문화교육”을 “문화여가 및 능력개발”로 변경한 것으로,
 - 이는 성북 여성취업교육센터 설치로 여성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직업상담 및 창업 지원·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제4항**은 감면 규정으로, 현행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하던 사용료 및 수강료(50%) 감면 혜택을 확장하여 18세 이하 2자녀 둔 가정에도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는 것임.

-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2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추세¹⁾를 반영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18세 이하 2자녀 가정에도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하고 있음.

<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별표 1의 비교란

1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안 제7조제1항제1호**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중 “10%”를 “100분의 10”으로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 **개정안〔별표 1〕(제2조제1호 관련 및〔별표 2〕(제5조 관련)**는 여성복지시설 명칭 변경 및 신규시설을 추가하고, 프로그램 내용 및 수강료 상한선 현실화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안 별표 1**에 ‘성북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명, 위치, 기능을 반영하고, 네이밍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기존 ‘성북여성회관’을 ‘성북여성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 **안 별표 2**는 수강료란 표의 **안 제5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내용 추가 등에 따른 수강료 상한선을 기존 월 4만원 이하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현실화하며, 대관료란 표의 신규 시설명과 이용기준을 마련한 것임.

1) 2021년 9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정책 추진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성북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이용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2자녀 가정에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7.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4호)
- 나. 회부일자: 2022. 8.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8. 2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기창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기존에 운영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재위탁 대상 : 가람어린이집 외 9개소
 - 변경위탁 대상 : 해피래미안 어린이집
- 위탁체 선정
 - 재위탁 대상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 변경위탁 대상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²⁾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위탁용어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수탁자도 공개 경쟁 참여 가능)

※2022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주요내용

- 기존 어린이집 중 가람어린이집 외 9개소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11일과 2023년 2월 28일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법인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
- 재위탁을 포기한³⁾ 해피래미안 어린이집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위탁 하려는 것이며, 협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구는 총 88개소가 운영 중이며, 구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재위탁 및 변경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시설명	면적	정원 (현원)	교직원	위탁체	인가일	위탁기간	비고
1	가람	448m ²	80명 (69명)	15명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한성열)	2013.01.10.	2017.10.12. ~ 2022.10.11.	민관협력 무상사용 협약(20년)
2	꿈의숲	126m ²	24명 (23명)	9명	개인(김정남)	2018.03.01.	2018.03.01. ~ 2023.02.28.	관리동 전환 무상사용 협약(10년)
3	돈암 하늘채	260m ²	50명 (41명)	12명	개인(함은희)	2018.03.01.		
4	래미안숲	112m ²	26명 (26명)	10명	개인(최승실)	2018.03.01.		
5	삼선예일	109m ²	24명 (22명)	8명	개인(이선주)	2018.03.01.		
6	안암래미안	160m ²	30명 (23명)	9명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김영태)	2018.03.01.		
7	현 대	109m ²	24명 (24명)	8명	개인(한순희)	2018.03.01.		
8	휴먼빌	151m ²	35명 (33명)	9명	개인(유연지)	2018.03.01.		
9	휴먼빌 키즈	100m ²	20명 (20명)	8명	개인(이정오)	2016.03.01.		매입 (2017.8.)
10	SK키즈 몬테소리	97m ²	21명 (21명)	9명	개인(김영)	2018.03.01.		관리동 전환 무상사용 협약(10년)

3)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 도래로 재위탁 포기함

〈변경위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시설명	면적	정원 (현원)	교직원	위탁체	인가일	위탁기간	비고
1	해피래미안	129m ²	30명 (30명)	11명	개인(안재열)	2018.03.01.	2018.03.01. ~ 2023.02.28.	관리동 전환 무상사용 협약(10년)

다. 적정성 검토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제1항⁵⁾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⁶⁾에서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변경위탁 반드시 공개 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위탁 및 변경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2⁷⁾,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 판단됨.

4)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6)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재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 및 변경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7.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5호)
- 나. 회부일자: 2022. 8. 1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8. 2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정
- 위탁사무내용
 -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
 - 어린이 급식소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등)
 - 급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소재지	규모	위탁기간(최초 위탁일)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북구 장월로1마길 56	151m ²	2020. 1. 1.~2022. 12. 31. (2011. 4. 6.)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계속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제3항⁸⁾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나. 주요내용

- 2022년 12월 31일자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라 함)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시설 현황 및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음.

8)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위치	시설 규모	총계	국비	시비	구비	조직구성
성북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	장월로 1 마길56 동덕여대	152m ²	630,000 (100%)	189,000 (30%)	220,500 (35%)	220,500 (35%)	총 : 13명 센터장 : 1명 영양기획팀장 : 1명 위생운영팀장 : 1명 팀원 : 10명

○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 조례”라 함)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되어 민간위탁⁹⁾으로 운영 중이며, 관내 등록대상 급식소의 100%가 등록하여 관리 중임.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2.7.31.기준)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총 관리대상 시설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관내 현황	208	6,166	15	866	39	1,039	262	8,071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¹⁰⁾ 구청장은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9) 위탁현황

- 수탁기간 :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2020~2022.12.31.(3년) 최초 위탁일 2011.4.6.

1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¹¹⁾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라. 위탁기간 선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위탁기관 선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¹²⁾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¹³⁾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재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 및 변경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7.수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6호)
나. 회부일자: 2022. 8.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1회 성북구의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8. 2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변경 사유

-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사업비 잔액정산)
-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2)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1년도 기금 정산 내역

(단위 : 천원)

' 20년도말 조성액(가)	' 21년도 증감액			' 21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922,110	△1,294	54,537	55,831	920,816

○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766,768	1,008,000	241,232

- 2021년 기정예산 766,768천원에서 1,008,000천원으로 증액 편성 · 당초 예치금 679,583천원에서 920,815천원으로 증액 편성

3)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66,768	1,008,000	241,232	
보 조 금	24,000	24,000	-	
예치금회수	679,583	920,815	241,232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
이자수입	14,385	14,385	-	
기타수입	48,800	48,800	-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66,768	1,008,000		
비용자성사업비	126,820	126,820		
융자성사업비	200,000	200,000		
예치금	430,772	672,004	241,232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기타지출	9,176	9,176		

4) 2022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 : 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2년말 조성액 (잔액)
1,008,000		135,996		672,004
보 조 금 24,000 예치금회수 920,815 이자수입 14,385 기타수입 48,800	-	비용자성사업비 126,820 융자성사업비 200,000 기타지출 9,176	=	· 2023년도 이월(예치금)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변경안의 개요

- 본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따른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¹⁴⁾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¹⁵⁾의 규정에 따라 식품 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3항¹⁶⁾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임.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5)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6)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나. 주요내용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발생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123만원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으로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2억 4,123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재원을 예치금 재원으로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마. 종합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35.8%, 2억 4,123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